

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18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17. 9. .

제 출 자 : 경상북도지사

1. 개정이유

-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4조의2의 개정('16.3.29.) 및 시행('17.3.30.)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됨에 따라,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조례의 본문과 별지 서식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청구인서명부의 “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변경(안 제8조제1항)
- 주민투표청구서의 “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변경(안 제9조제1항)
- 청구인서명부 사본 열람관련 “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”을 “생년월일을”로 변경(안 제10조제2항)
- 별지 서식의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변경(별지 제1호 부터 제7호)

3. 개정조례(안) : 붙임

4. 관련법령 : 붙임

5. 신·구 조문대비표 : 붙임

6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가. 예고기간 : 2017. 7. 3. ~ 7. 24.까지 (경상북도 공고 제2017-992호)

나. 예고방법 : 도보 및 경상북도 홈페이지

7. 관련부서 협의

- 예산관련 :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[예산담당관실-6615(2017.6.20.)]
 -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: 붙임
-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 요인 없음 [감사관실-8651(2017.6.26.)]
-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여성가족정책관실-15367(2017.6.16.)]
-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비대상 [혁신법무담당관-6370(2017.6.19.)]

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8조제1항 중 “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”을 “생년월일을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 부터 별지 제7호 서식의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)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· <u>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</u> 또는 <u>외국인등록번호·주소나</u>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	제8조(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) ① ----- ----- - <u>생년월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
제9조(청구인서명부의 제출과 서명의 확인)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·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· <u>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</u> <u>또는 외국인등록번호</u> , 청구의 대상 및 취지,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 할 수 있다. ② ~ ③ (생략)	제9조(청구인서명부의 제출과 서명의 확인) ① ----- ----- ----- <u>생년월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~ ③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청구인서명부의 열람) ① (생략) ② 도지사는 <u>주민등록번호나 국내</u> <u>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</u> 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. ③ ~ ④ (생략)	제10조(청구인서명부의 열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생년월일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③ ~ ④ (현행과 같음)

관 련 법 령 발 취

□ 개인정보 보호법

제2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)

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(이하 “고유식별정보”라 한다)를 처리할 수 없다.

1.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
2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

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

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.

1. 법률·대통령령·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
2.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
□ 주민투표법

제10조(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)

- ① 주민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(이하 “청구인대표자”라 한다)를 선정하여야 하며,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.
- ③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12조(청구인서명부의 심사·확인 등)

- ①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, 자치구·시 또는 군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,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⑨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, 서명요청, 청구인서명부의 작성·제출방법, 서명에 대한 심사·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

제6조(서명요청방식)

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,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도지사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제8조(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)

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·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·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

제9조(청구인서명부의 제출과 서명의 확인)

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·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·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, 청구의 대상 및 취지,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.

제10조(청구인서명부의 열람)

-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·군별로 읍·면·동으로 구분하여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
- ② 도지사는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.

제15조(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)

-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“별지 제1호 서식”에 의한다.
-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“별지 제2호 서식”에 의한다.
-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“별지 제3호 서식”,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“별지 제4호 서식”에 의한다.
- ④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“별지 제5호 서식”에 의한다.
-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“별지 제6호 서식”에 의한다.
-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“별지 제7호 서식”에 의한다.

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본 조례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의 근거가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한 조례의 본문과 별지서식을 생년월일 기재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으로 인한 추가 재정 수반사항이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기재로 변경함에 따른 추가비용 수반사항이 없으므로, 「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.

4. 작성자

-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주사 우성룡(☎054-880-2836)